

북수원자이 텍스비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 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1.02월 중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수원 111-1구역(정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 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29층 총 2,607세대 중 일반분양 1,5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분양일정(예정)

구분	예정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1년 2월 中	당사 홈페이지 (bs-xi.co.kr)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2021년 3월 中	
특별공급 접수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개별조회 가능)
계약체결 기간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 (수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추천대상자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시행일 '18 12 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환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차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 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제사용 불가, 해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4. 기타 유의사항

-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써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간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이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청약 미달로 추가 추천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 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전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건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 상이 한 것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5. 문의사항

대표번호 : 1661-4386 / 홈페이지: bs-xi.c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자이 텍스비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광역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예정 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현황 및 개발 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2006-281호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8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2017 ~ 2022)

북수원자이 텍스비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단지 조감도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